###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4728 제출연월일: 2024. 10. 16.

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적·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,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'정당한 사유'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제3호 중 "전문인력 양성기관"을 "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・②	제23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	3
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	
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	
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	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	
을 취소하여야 한다.	<b>.</b>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전문인력 양성기관</u> 지정일부	3.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
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	<u>양성기관</u>
경우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